
신 :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제 목 :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전송일자 : 2015. 1. 6.(화)
전송매수 : 총 3매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서

2014. 10. 31.과 12. 8.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들 뿐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1. 현행 변호사법 제97조의 2 제1항은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지방변호사회장 외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를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것 외에 법률상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변호사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기소되는 경우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시신청권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권 제도와 개정 논의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징계개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97조의 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2항). 한편 협회장이 징계청구를 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인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결국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협회장이나 협회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관여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3. 변호사법 제97조의 4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2014. 10. 31. 접수된 위 징계개시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으며 협회장은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법 제97조의 5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4. 이번에 징계개시가 신청된 회원들 중에는 기소가 안 된 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징계신청 사유를 보면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변호사들의 변호권과 피의자에 대한 조력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징계개시 신청 사유와 범위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6.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